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6월 5일
- 회부일자 : 2006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을 현실에 맞게 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- 옥외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·군수로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됨
- 다만, 본 조례의 폐지로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.